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

제1조(목적)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(이하 "약정"이라 한다)은 ○지방고용노동(지)청(이하 "<u>위탁자</u>"라 한다)과 ○○운영기관(이하 "<u>운영기관</u>"이라 한다) 간에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"(이하 "도약장려금사업"이라 한다)의 위탁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.

제2조(약정기간) 약정기간은 20 . . . 부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.

- **제3조(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)** ① "위탁자"는 운영기관의 배정 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,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위탁사업 내용)**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에 도약장려금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.
 - ①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
 - ②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·모집
 - ③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·지원
 - ④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
 - ⑤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사전 지급요건심사 등
 - ⑥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
 - ⑦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·점검
 - ⑧ 지침 및 기타 "위탁자"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
- 제5조(당사자의 책무) ①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이 이 약정에 따른 도약장려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"운영기관"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,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 - ③ "운영기관"은 관계 법령, 도약장려금사업 지침과 약정 등에 따라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④ "운영기관"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,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"위탁자"에게 알리고, 이 때 협약을 체결한 기업·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탁사업비의 교부) ① "운영기관"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2회 분할 신청하고, "위탁자"는 지급조건이 충족된

경우 "운영기관"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.

- ② "운영기관"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,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탁사업비 관리) ① "운영기관"은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 비는 "위탁자"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사업 지도 관리)** ① "운영기관"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청구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 확정 시 기업·청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시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, 지원금 지급 심사 시에도 기업·청년의 적격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"위탁자"가 기업에 대한 지도·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"운영기관"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.
- 제9조(사업계획 등의 변경) ① "운영기관"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, 목표인원,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,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"위탁자"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"운영기관"이 "위탁자"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, "위탁자"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, 경고,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**제10조(약정의 해지 및 환수)** "운영기관"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"위탁자"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탁사업비의 반환·상계) ① "운영기관"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, 해당 위탁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"위탁자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이 위탁운영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약정이 해지된 경우, 사업의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.
 - ③ "운영기관"이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, 동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④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,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(사후정산 및 환수) ① "운영기관"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"위탁자"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이 위탁사업비를 도약장려금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, "위탁자"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.

- ③ "운영기관"은 위탁사업비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,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"위탁자"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"운영기관"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, "운영기관"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.
- ⑤ 이의제기를 받은 "위탁자"는 제기일(접수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"운영기관"에 통보하고, 필요시 1회 연장(14일) 할 수 있다.
- ⑥ "운영기관"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,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결과에이의제기를 한 "운영기관"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(제재)** "운영기관"이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·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"위탁자"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지도감독의 수인) ①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, 기타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"운영기관"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.
 - ② "위탁자"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, 지도·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"운영기관"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, "운영기관"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보고의무)** ① "운영기관"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, 부정청구,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"위탁자"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"위탁자"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16조(준용)**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, 지침,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.

붙임: 사업계획서 1부.

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"위탁자", "운영 기관"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> 년 월 일 (위탁자) 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(인) (운영기관) ○○운영기관장 (인)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'참여기업'의 경영에 관한 사항, '참여 청년'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,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·유포하지 않는다.
- 2.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'참여기업'의 경영에 관한 사항, '참여 청년'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.
- 3. 아울러,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
이상과 같이 '기업의 경영정보' 및 '참여청년의 개인정보'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,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운영기관명:

서 약 자 :

(서명 또는 인)

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, 위탁계약이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(안)

- 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○○운영기관(이하 "을"이라 한다)은 "갑"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"을"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"갑"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"을"에게 위탁하고, "을"은 이를 승낙하여 "을"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1호)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- **제3조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** "을"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확인 및 등록
 - 2. 졸업(예정)증명서, 병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
- 제4조(위탁업무 기간)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계약 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- 제5조(재위탁 제한) ① "을"은 "갑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갑"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 - ② "을"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"을"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"갑"에게 통보하고 혐의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"을"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** ① "을"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② "을"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갑"에게 반납

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"을"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"갑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"갑"은 "을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, "을"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- 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- 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- 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 수여부
- 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
- 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"갑"은 "을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"을"을 교육할 수 있으며, "을"은 이에 응하여 야 한다.¹⁾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갑"은 "을"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제9조(정보주체 권리보장) "을"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- **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)** "을"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"갑"에게 확인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손해배상) ① "을" 또는 "을"의 임직원 기타 "을"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을" 또는 "을"의 임직원 기타 "을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"갑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을"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갑"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갑"은 이를 "을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"갑"과 "을"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 (갑) ○○ 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(인) (을) ○○ 운영기관 대표 (인)

1)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(컨소시엄)

제1조(목적)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(이하 "약정"이라 한다)은 ○ ○지방고용노동(지)청(이하 "<u>위탁자</u>"라 한다)과 ○○운영기관(이하 "<u>운영기관</u>"이라 한다), ○○컨소시엄 기관 (이하 "<u>컨소시엄 기관</u>"이라 한다) 간에 "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"(이하 "도약장려금 사업"이라 한다)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.

제2조(약정기간) 약정기간은 20 . . . 부터 지원금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.

- **제3조(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)** ① "위탁자"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,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추가 배정 또는 축소 배정할 수 있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위탁사업 내용)** ①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에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.
 - 가.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
 - 나.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·모집
 - 다.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·지원
 - 라.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
 - 마. 참여기업의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사전 지급요건심사 등
 - 바.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
 - 사.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·점검
 - 아. 지침 및 기타 "위탁자"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
 - ② "컨소시엄 기관"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.

가.

나.

다.

- 제5조(당사자의 책무) ①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이 이 약정에 따른 도약장려금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"운영기관"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,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 - ③ "운영기관"은 관계 법령, 도약장려금사업 지침과 약정 등에 따라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,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

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④ "운영기관"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,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"위탁자"에게 알리고, 이 때 협약을 체결한 기업·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탁사업비의 교부) "운영기관"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2회 분할 신청하고, "위탁자"는 지급조건이 충족된 경우 "운영기관"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.
- 제7조(위탁사업비의 사용) "운영기관"은 위탁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("운영기관"이 "컨소시엄 기관"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.)
- 제8조(위탁사업비의 관리) ① "운영기관"은 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("컨소시엄 기관"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)
 - ② "운영기관" 및 "컨소시엄 기관"은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위탁사업비는 "위탁자"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9조(사업 지도 관리) ① "운영기관"은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청년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·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청구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 확정 시 기업·청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시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, 지원금 지급 심사 시에도 기업·청년의 적격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. 여부를 재확인하고, 지원금 지급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매번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③ "운영기관"은 "컨소시엄 기관"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④ "위탁자"가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"운영기관"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.
- 제10조(사업계획 등의 변경) ① "운영기관"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업무담당자의 변경, 목표인원,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, 컨소시엄 기관의 변경,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"위탁자"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"운영기관"이 "위탁자"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, "위탁자"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, 경고,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1조(약정의 해지 및 환수) "운영기관"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"위탁자"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(약정해지의 효력은 "컨소시엄 기관"에도 미친다.)
- 제12조(위탁사업비의 반환·상계) ① "운영기관"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,

해당 위탁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"위탁자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- ② "운영기관"이 위탁운영약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약정이 해지된 경우, 사업의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, 약정기간 미준수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.
- ③ "운영기관"이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, 동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에 기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,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사후정산 및 환수) ① "운영기관"은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("컨소시엄 기관"의 지출내역도 포함)하여 그 결과를 "위탁자"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과 "컨소시엄 기관"이 위탁사업비를 도약장려금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, "위탁자"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.
 - ③ "운영기관"과 "컨소시엄 기관"은 위탁사업비 선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,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 - ④ "위탁자"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("컨소시엄 기관"의 정산내역도 포함) 후 "운영기관"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, "운영기관"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.
 - ⑤ 이의제기를 받은 "위탁자"는 제기일(접수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"운영기관"에 통보하고, 필요시 1회 연장(14일) 할 수 있다.
 - ⑥ "운영기관"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,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"운영기관"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결정된 위탁사업비를 "위탁자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**제14조(제재)** "운영기관"과 "컨소시엄 기관" 관계 법령,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·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"위탁자"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지도감독의 수인)** ① "위탁자"는 "운영기관"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,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"운영기관"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- ② "위탁자"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, 지도·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"운영 기관"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, "운영기관"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**제16조(보고의무)** ① "운영기관"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, 부정청구,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"위탁자"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"운영기관"은 "위탁자"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도약장려금사업 실시 상황을

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준용)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령, 지침,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.

붙임: 사업계획서 1부.

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,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"위탁자", "운영 기관", "컨소시엄 기관"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		· 년	월	일
(위 탁 자)	○○ 지방고용노동(지)청장		(인)
(운영기관)	○○ 운영기관장		(인)
(컨소시엄 기관)	○○ 컨소시엄기관장		(인)

보 안 서 약 서

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'참여기업'의 경영에 관한 사항, '참여 청년'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,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·유포하지 않는다.
- 2.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'참여기업'의 경영에 관한 사항, '참여 청년'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.
- 3. 아울러,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
이상과 같이 '기업의 경영정보' 및 '참여청년의 개인정보'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,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및 위탁사업비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년 월 일

운영기관명 : 서약자 : (서명 또는 인)

건소시엄기관명 : 서약자 : (서명 또는 인)

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, 위탁계약이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(안)

- 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○○운영기관(이하 "을"이라 한다), ○○건소시엄 기관(이하 "병"이라 한다)은 "갑"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"을"과 "병"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- 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"갑"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"을"과 "병"에게 위탁하고, "을"과 "병"은 이를 승낙하여 "을"과 "병"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1호)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 "을"과 "병"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 확인 및 등록
 - 2. 졸업(예정)증명서, 병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
- 제4조(위탁업무 기간)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계약 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- **제5조(재위탁 제한)** ① "을"과 "병"은 "갑"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"갑"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 - ② "을"과 "병"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"을"과 "병"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"갑"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"을"과 "병"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① "을"과 "병"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② "을"과 "병"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6조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

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"갑"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"을"과 "병"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"갑"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"갑"은 "을"과 "병"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, "을"과 "병"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- 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- 3.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- 4. 목적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
- 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
- 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"갑"은 "을"과 "병"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과 "병"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"갑"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"을"과 "병"을 교육할 수 있으며, "을"과 "병"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¹⁾
-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"갑"은 "을", "병"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제9조(정보주체 권리보장) "을"과 "병"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- 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) "을"과 "병"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"갑"에게 확인받아야 한다.
- 제11조(손해배상) ① "을"과 "병" 또는 "을"과 "병"의 임직원 기타 "을"과 "병"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"을"과 "병" 또는 "을"과 "병"의 임직원 기타 "을"과 "병"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"갑"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"을"과 "병"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"갑"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"갑"은 이를 "을"과 "병"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, "갑"과 "을", "병"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		년	월	일
(갑)	○○ 지방고용노동(지)청장		(인)
(을)	○○ 운영기관 대표		(인)
(병)	○○컨소시엄 기관 대표		(인)

^{1) 「}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